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 계 · 주의 요 구

제 목 노인복지포털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조치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

훈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○○○○○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1 .2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○
○○○○○○○○과에서 “노인복지포털 홈페이지”업무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.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
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
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
하여야 하고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제7조에 따르면 비밀번호 정보를
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 시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“노인복지포털 홈페이지”와 관련하여 업무 추진시
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
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여야 했다.

그런데 위 관서의 ○○○○○○○○○과 실무책임자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은 ○○○○○부서인 ○○○○○과에서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‘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’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공문(○○○○○과-○○○○, 2017.○.○○.)을 접수받고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대한 적용 여부를 시스템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유지보수 수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양호하다는 실태점검표와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여 ○○○○○과로 2017.○.○○.공문(○○○○○○○○○과-○○○○○○○호)으로 제출하였으며, 감사기간 중 “노인복지포털 홈페이지”의 ○○○ 기능에 대하여 테스트한 결과 ○○○ 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○○ 전송되었다.

이에 따라 충청남도 ○○○○○○○과에서는 “노인복지포털 홈페이지”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기간 중 유지보수 수탁업체를 통하여 ○○○ ○○○○ 등을 설치하여 조치하였다.

따라서 위 관서의 실무책임자인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보안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